

[홍콩] 2018년 5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□ 주요내용

- 홍콩 초이섬(채심) 샘플에서 살충제 성분인 싸이할로쓰린(Cyhalothrin) 과다 검출 (2018년 5월 31일)
 - 홍콩 식품안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식품 안전검사에서 수입산 초이섬(중국 배추)샘플을 추출하여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0.4ppm(parts per million)이 검출되었음. 최대법적 허용치는 0.2ppm임.
 - 살충제 잔류 농약에 관한 식품 규정(Cap 132CM)에 따르지 않고 법적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을 수입하거나,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.
 -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식품의 출처를 추적하고 테스트용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.
 - 채소류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은 깨끗이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완전히 행굴 것을 권고, 또한 필요시 브러시로 야채의 표면을 깨끗이 닦아서 살충제 및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.

□ 시사점

- 채소류의 변질을 막고자 살충제를 과다 사용할 경우 홍콩 식품안전센터

의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음. 특히 야채나 채소류는 온도가 높거나 운송 과정 중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살충제 사용 관리를 엄격히 관리하여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
○ 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8. 5. 31)

관련 웹사이트 : <http://www.fehd.gov.hk/>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□ 수입 규제 품목

- 홍콩은 다습한 기후로 바이러스의 전파가 쉬워 사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중
 - 주로 국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수산물·육류·가금류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 실시
 - 특히 홍콩은 자유무역·규제프리 정책으로 수입 규제 품목은 매우 적음.

□ 한국 제품의 대홍콩 수입 규제 품목

- 홍콩-한국은 상호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홍콩의 대한국 수입 규제 조치 발효는 없는 편임
- 한국의 생굴·가금류·육류 등 제품에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 해제되었음
 - 2006년 한국산 생굴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해 수입 규제
 - 2014년 5월 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병하여 잠정적으로 한국 가금류 수입 금지
 - 한편, 돼지고기는 2014년에 일부지역(전라도 및 제주도)에 한해 수입 가능
 - 상호 협정 체결이 연기되었던 한국산 쇠고기는 2015년 11월19일 홍콩

- 수출관련 검역·위생 절차를 마무리해 최종 승인, 대홍콩 수출이 가능
- 식품환경위생서, 2017년 11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이유로 전라북도·경상남도·대구 지역의 달걀 및 가금류의 대홍콩 수입을 잠정 중지 발표했으나 같은 달 29일 해제

Ⅰ 한국 제품에 대한 홍콩의 과거 수입 규제 사례 Ⅰ

품목	사유	내 용
생굴	바이러스 발생	- 2006년 규제 실시 - 2018년 현재 별도 규제 없음
달걀 및 가금류	조류 독감	- 2014년 5월 규제 실시 - 2016년 3월 7일 수입재개 - 2016년 3월 29일 조류독감 발병으로 경기도지역 제품의 수입을 규제했으나, 9월 6일 해제 - 2017년 6월 8일·16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으로 울산·제주지역 제품의 수입을 규제했으나, 10월 27일 해제 - 2017년 11월 21일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전라북도·경상남도·대구 지역산 제품 수입을 규제했으나, 같은 달 29일 해제
돼지고기(生)	구제역 발생	- 2014년 4월 9일 일부지역 수입 재개
쇠고기(生)	상호협정 미체결	- 2015년 11월 19일 수입 승인

자료 : 홍콩 세관

- 대홍콩 식품 수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인증 취득 필요
- 홍콩뿐 아니라 캐나다, 영국 등 선진국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가능한 준용할 것
 - 육류는 전염병 발병에 따른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의 정보와 각국의 수입 제한조치 유의

Ⅲ

통관문제사례

- 해당사항 없음